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

소송종류	행정소송	법 원 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16구합O○○	사건유형	영업허가취소정지
원 고	□□□□ □□□□	피 고	◆◆◆◆◆ ◆◆◆ 외 1
판결선고일	2016.11.24.	비 고	2017.06.07. 항소 취하
사건개요	원고는 2013.10.25. ○○○○○○학교와 “옥상 방수 및 창호 코킹교체, 외부도색 공사 계약”(이하 “이 사건 공사계약”이라 한다.)을 체결하였다.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있어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 시공하여야 하는데 무면허 업체인 ■■■■에게 공사 전부를 일괄 하도급 한 사실이 있어, 피고 ◆◆◆◆◆ ◆◆◆으로부터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9조 위반과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에 따라 12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다. 또한 이 사건으로 ◇◇◇◇◇ ◇◇◇으로부터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3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8,580,000원의 처분을 받았다.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전체를 하도급 한 사실이 없고, 과징금 역시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처분이라며 소를 제기하였다.		
주 문	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		
청구(항소)취지	피고 ◆◆◆◆◆ ◆◆◆이 2016.02.02. 원고에 대하여 한 12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하고, 피고 ◇◇◇◇◇ ◇◇◇이 2016.01.28. 원고에게 한 8,580,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		
판결이유	원고는 ○○○○초등학교와 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6일이 경과한 후인 2013.10.31. ■■■■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하였다. ■■■■을 운영한 △△△은 법정에서 자신은 ▼▼▼▼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소개받았고, 하도급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으며 처음부터 ■■■■이 이 사건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다 알고 있었고,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도 원고가 작성 후 서명을 하라고 해서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.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자재대금을 일부 지급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은 하였으나, ■■■■의 △△△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자재대금을 직접 지불하겠다고 하여 자재대금을 지급하게 하였고, ■■■■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한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, 앞서 본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. 원고는 ▼▼▼▼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▼▼▼▼이 ■■■■에게 재하도급한 것을 확인하고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지만, 원고가 ▼▼▼▼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, 이를 해지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.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		
결 론	원고의 청구 이유는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.		